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어촌뉴딜300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수산생물 질병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소속기관과 책임운영기관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며,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수산부령 제 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제6호 중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수산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생물 국가방역기관 업무의 총괄 및 제도개선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의 수집, 보존 및 분양에 관한 업무
3.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4.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계획 수립 및 실시
5. 수산생물 병성감정 및 확정진단에 관한 업무
6.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등에 관한 업무
7.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관한 업무
8.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
9. 수산생물방역관(사)의 교육·임명 및 위촉에 관한 업무
10. 양식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 조사에 관한 업무
11. 수산용의약품 심사·등록·검정 등에 관한 업무

12. 수산용의약품 법령 및 약사감시 등에 관한 업무

13. 방역 및 수산용의약품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수산기구에 관한 업무

제22조제9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및 국가재정의 집행에 관한 업무

9의2.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 등 사업관리에 관한 업무

9의3.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22조제1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및 국가재정의 집행에 관한 업무

8의2.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 등 사업관리에 관한 업무

8의3.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수산종자육종연구소) ① 수산종자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 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장 소속으로 수산종자육종연구소를 둔다.

②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수산종자육종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1과 같다.

제38조제1항 중 “중앙내수면연구소장의”를 “수산종자육종연구소장의”로, “중앙내수면연구소장 소속”을 “수산종자육종연구소장 소속”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①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어촌양식정책관이 겸임한다.

②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어촌어항재생과를 두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어촌어항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수립

2.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련 재정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

3. 어촌어항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선정에 관한 업무

5.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6. 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7.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위한 공동체 사업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및 운영

10. 어촌어항재생사업 지역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어촌어항재생사업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④ 어촌어항재생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0과 같다.

제4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1월 30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의 동해수산업연구소란의 고래연구센터를 삭제하고, 같은 표 소속의 남해수산업연구소란 및 중앙내수면연구소란을 삭제하며, 수산종자육종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산종자 육종연구소	어류육종 연구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어류육종에 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
---------------	--------------	-------------	--------------------

별표 18 총계 “272”를 “29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270”을 각각 “289”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4”를 “25”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전산주사 73 다음에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6”을 신설하고, 행정서기·해양

수산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50”을 “51”로 하며,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3”을 “4”로 하고,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2”를 “20”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를 “3”으로 한다.

별표 18의2 총계 “273”를 “29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271”을 각각 “290”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4”를 “25”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전산주사 75 다음에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6”을 신설하고,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50”을 “51”로 하며,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3”을 “4”로 하고,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2”를 “20”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를 “3”으로 한다.

별표 24 중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등대관리주사”를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등대관리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로,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등

대관리서기·운전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를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로,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등대관리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를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로 한다.

별표 25 중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등대관리주사”를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등대관리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로,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등대관리서기·운전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를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로,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등대관리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를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

·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로 한다.

별표 27 총계 “633”을 “614”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631”을 각각 “612”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24”을 “605”로 한다.

별표 30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46조제8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11월 30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해양수산부령 제30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중 “정원 3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등대관리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명)”을 “정원 3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명)”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중 “정원 1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등대

관리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을 제외한 정원 6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명 및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등대관리주사 1명)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25의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등대관리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를 “정원 1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을 제외한 정원 6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명 및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25의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6항, 제35조, 제38조

제1항, 별표11, 별표14, 별표18, 별표18의2 및 별표27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산종자육종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 (제34조제4항 관련)

위 치	분 장 사 무
전라남도 해남군	수산종자에 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

해양수산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2제4항 관련)

1.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

총 계	7
일반직 계	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4

2.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존속기한: 2023년 11월 30일)

총 계	5
일반직 계	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항만국) ① ~ ⑤ (생략)	제11조(항만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항만연안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항만재개발 <u>사업계획 및 실시계획</u> 의 수립·승인	6. ----- <u>사업계획</u> ----- -----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10.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에 관한 업무	<삭 제>
11.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삭 제>
12. ~ 19. (생략)	12. ~ 19. (현행과 같음)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① ~ ⑤ (생략)	제1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수산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생물 국가방역기관 업무의 총괄 및 제도개선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의 수집, 보존 및 분양에 관한 업무
	3.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4.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계획 수립 및 실시

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① ~ ⑧ (생략)

⑨ 항만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항만재개발 관련 사업관리

<신 설>

5. 수산생물 병성감정 및 확진 진단에 관한 업무

6.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등에 관한 업무

7.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관한 업무

8.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

9. 수산생물방역관(사)의 교육·임명 및 위촉에 관한 업무

10. 양식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 조사에 관한 업무

11. 수산용의약품 심사·등록·검정 등에 관한 업무

12. 수산용의약품 법령 및 약사 감시 등에 관한 업무

13. 방역 및 수산용의약품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수산기구에 관한 업무

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8. (현행과 같음)

9.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및 국가재정의 집행에 관한 업무

9의2.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어

<신 설> 10. ~ 16. (생 략) ⑩ ~ ⑬ (생 략) ⑭ 항만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항만재개발 관련 국가재정의 집행 및 사업관리 <신 설> <신 설> 9. ~ 15. (생 략) ⑮ (생 략) <신 설>	업 및 용지 보상 등 사업관리 에 관한 업무 9의3.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10. ~ 16. (현행과 같음) ⑩ ~ ⑬ (현행과 같음) ⑭ ----- -----. 1. ~ 7. (현행과 같음) 8.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및 국가재정의 집 행에 관한 업무 8의2.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어 업 및 용지 보상 등 사업관리 에 관한 업무 8의3.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9. ~ 15. (현행과 같음) ⑮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산종자육종연구소) ① 수산종자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수 산종자육종연구소를 둔다. ②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 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		제38조(연구센터) ① 수산연구소 장 및 중앙내수면연구소장의 소 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산 연구소장 및 중앙내수면연구소 장 소속으로 연구센터를 둔다. ②·③ (생 략) <신 설>	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④ 수산종자육종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1과 같다. 제38조(연구센터) ① ----- --- 수산종자육종연구소장의 - ----- ----- 수산종자육종연구소 장 소속-----.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 단) ①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장은 어촌양식정책관이 겸임한 다. ②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어촌어항재생과를 두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 한다. ③ 어촌어항재생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수립 2.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련 재정 확보 및 지원 계획 수립 3. 어촌어항재생사업 활성화 방 안에 관한 사항 4.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선 정에 관한 업무 5.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	---	--	--	--

제46조(한시정원) ① ~ ⑦ (생략) <신 설>	6. 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7.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위한 공동체 사업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및 운영
	10. 어촌어항재생사업 지역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어촌어항재생사업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④ 어촌어항재생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0과 같다.
	제46조(한시정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1월 30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72	291	+19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0	289	+19
일반직 계	270	289	+19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3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원	<신 설>	1	+1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4	25	+1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원	<신 설>	16	+16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50	51	+1

해양수산연구관 환경연구관	또는	<u>3</u>	<u>4</u>	+1
해양수산연구사 환경연구사	또는	<u>22</u>	<u>20</u>	-2
·		·	·	
사무운영서기보		<u>2</u>	<u>3</u>	+1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의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73</u>	<u>292</u>	+19
1	·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71</u>	<u>290</u>	+19
일반직 계	<u>271</u>	<u>290</u>	+19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3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신 설>	1	+1
·	·	·	
행정사무관·해양수산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24</u>	<u>25</u>	+1
·	·	·	
행정주사·해양수산 주사·전산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신 설>	16	+16
·	·	·	
행정서기·해양수산 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u>50</u>	<u>51</u>	+1

·	·	·	
해양수산연구관 환경연구관	또는 <u>3</u>	<u>4</u>	+1
해양수산연구사 환경연구사	또는 <u>22</u>	<u>20</u>	-2
·	·	·	
사무운영서기보	<u>2</u>	<u>3</u>	+1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7]

국립수산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633</u>	<u>614</u>	-19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631</u>	<u>612</u>	-19
일반직 계	<u>631</u>	<u>612</u>	-19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24</u>	<u>605</u>	-19
·	·	·	
·	·	·	